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796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장민후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10. 5.

판 결 선 고 2022. 12. 14.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51487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7.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21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13를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2) 피고의 채무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가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C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여 왔으며,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는 모친을 봉양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친의 사망 후 가족들이 모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게 된 것일 뿐이므로 사해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5, 6,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부 I과 모 J에게 꾸준히 경제적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I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수원가정법원에 I의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신청하여, ‘피상속인 망 I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피상속인 망 I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2022느합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I의 상속인들은 피고의 부모 봉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I의 배우자인 J 또한 자녀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2/13)의 가액이 특별히 거액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욱, 판사 안좌진, 판사 이혜미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아파트 Q동

[도로명주소] 수원시 영통구 R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아파트

1 내지 10층 각 959.44㎡

지층 953.6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수원시 영통구 O 대 33691.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S호 철근콘크리트조 109.53㎡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3691.5분의 63.493. 끝.

